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326 호 2022. 1. 20.(목)

###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94호[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1호[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3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0호[공고]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5호[공시송달 공고] .....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8호[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9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81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등의 공개] .....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89호[「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희망업소 모집공고] ..... 12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1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2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3호[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4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22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94호

울산광역시 복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자조건·한도액 및 용자금리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우리 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용자규모 내용을 추가 명시하는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용자금액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제3항)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11호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46-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 나. 명 칭: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청소년창작센터 및 여성행복맞춤센터 건립공사)

####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	규 모	비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창작센터 및 여성행복맞춤센터	부지면적 4,249.4m <sup>2</sup> , 연면적 1,700m <sup>2</sup> 정도	부지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기간: 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70호

## 공 고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공인 조례」 제11조에 따라 등록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 울산광역시 복구의회의장

## □ 등록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인영	비고
1	울산광역시복구 의회인사위원회인	인사위원회운영	2022. 1. 21.		
2	울산광역시복구 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운영	2022. 1. 2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75호

##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성안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 17. ~ 2022. 2. 4. (18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울산광역시 복구 가대동	908-17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25	

####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2. 3.(목)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8호

##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CCTV 설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3. 행정예고 내용 : CCTV 설치 장소 안내

시 설 명	정류소 번호	정류소 명	설치대수	비 고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40360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	1대	
	40363	제일풍경채정문	1대	
	40374	반도유보라정문	1대	
	40360	반도유보라정문	1대	
	40363	한라비발디	1대	
	40374	금강펜테리움	1대	
	40377	송정하우스디	1대	
	30606	농심메가마트앞	1대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1. 17. ~ 2. 6.(20일간)

####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2층 교통행정과

- 전 화 : 052) 241 - 7984      • F A X : 052) 241 - 7869

마. 의견서 제출 서식 : 【붙임】 참고

바.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붙 임】

## 의 견 서

사 업 명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대 표 자 (기관/단체일 경우)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스마트에어클린 버스승강장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79호

##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인원 : 10명 이내
2. 접수기간 : 2022. 1. 20.(목) ~ 2020. 1. 29.(토) 18:00까지
3. 접수처 : 울산광역시 복구 건설과 토목담당 (☎052-241-7873)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복구청 건설과 토목담당
  - 이메일 : hj1024@korea.kr
5. 제출서류 : [별지] 신청서 1부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7. 자격요건
  -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8. 활동내용
  -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교통소통 등)을 심의·조정
  -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9. 선정결과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10. 기타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구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 토목담당(☎ 241-7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직 장 명 (직장주소)			
연 락 처	휴 대 폰 :		자 택 :
E-mail			
최종학력 (전공)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81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등의 공개

코리아신타 주식회사에서 시행 중인 “강동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강동골프장 조성사업
- 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3번지 일원
- 다. 면적: 719,973.8m<sup>2</sup>
- 라. 시행자: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대표 백인균
- 마. 승인기관: 울산광역시 복구청
- 바. 협의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 사. 사업기간: 2020. 4. 10. ~ 2021. 12. 31.

#### 2. 공개방법 및 내용

- 가. 공개방법: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홈페이지에 게시
- 나. 공개내용: 「강동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사항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89호

##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희망업소 모집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컨설팅 희망업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함

■ 대 상 :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모집업소 수 : 40개소

■ 사업내용 : 전문 컨설팅 업체가 업소별로 방문하여 위생등급 평가 사전준비, 모의평가,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신청 절차 진행

■ 비 용 : 무 료

#### II 지원자격

### ■ 지원자격

- 관내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후 음식점 위생등급(재)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 최근(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는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업소

## Ⅲ

### 신청 및 문의

####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19.(수) ~ 2. 28.(월) 09:00~18:00
    -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방문 :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4층)
    -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 이메일 : tmdgmldi35@korea.kr
    - 팩스 : 052-241-7769
    - ※ 이메일, 팩스 접수 시 수신사항 전화 확인 요함
  - 제출서류 :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
  - 결과통지 : 개별통보
- 문 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 052-241-778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치락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1. 개정이유

○ 2022. 6. 1. 총선거 실시 예정임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
-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제2항제1호)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치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4
----------	-----

제출연월일 : 2022. 1. 18.

발 의 자 : 정치락 · 임채오 · 이정민 ·  
이진복 · 이주언 · 정외경  
임수필 · 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 1. 개정이유

- 2022. 6. 1. 총선거 실시 예정임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
-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제2항제1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142조, 제150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다. 입법예고 : 2022. 1. 20. ~ 1. 25.(5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3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0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 ----- ----- ----- ----- -----</p>
<p>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p>	<p>제4조(집회일 등) ① ----- ----- ----- ----- -----</p>
<p>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lt;단서 신설&gt;</p>	<p>1 ----- ----- -----</p>
<p>2. (생략)</p>	<p>----- ----- -----</p>
<p>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p>	<p>----- ----- -----</p>
<p>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제출 안건</p>	<p>1. -----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 ----- -----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2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의경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1. 개정이유

○ 입법·법률고문의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고문 위촉 시 지역 제한 사항 삭제(안 제3조제1항)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5
----------	-----

제출연월일 : 2022. 1. 18.  
 발 의 자 : 정외경·임채오·이정민·  
                   이진복·이주언·정치락  
                   임수필·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 1. 개정이유

- 입법·법률고문의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고문 위촉 시 지역 제한 사항 삭제(안 제3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나. 입법예고 : 2022. 1. 20. ~ 1. 25.(5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관내 소재하는 변호사”를 “변호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촉) ① 고문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 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u>울산광역시 관내 소재하는 변호사</u>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위촉) ① ----- ----- ----- <u>변</u> <u>호사</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3호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1.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원 선임 대상자격 중 지역 거주 제한 사항 삭제(안 제4조)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6
----------	-----

제출연월일 : 2022. 1. 18.

발 의 자 : 임수필 · 임채오 · 이정민 ·  
이진복 · 이주언 · 정치락  
정외경 · 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 1.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원 선임 대상자격 중 지역 거주 제한 사항 삭제(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22. 1. 20. ~ 1. 25.(5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u>울산광역시</u>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p> <p>1. ~ 3. (생략)</p>	<p>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 ----- ----- <u>다음</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2-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0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청원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나. 청원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추가(안 제6조제1항)
- 다. 기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5일 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2)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79
- 다. 기재내용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4) 의견서 : 하단 참조

#### 4. 그 밖의 사항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현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7
----------	-----

제출연월일 : 2022. 1. 18.

발 의 자 : 백현조 · 임채오 · 이정민 ·  
이진복 · 이주언 · 정치락  
정외경 · 임수필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청원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나. 청원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추가(안 제6조제1항)
- 다. 기타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5조 ~ 제8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 나.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다. 입법예고 : 2022. 1. 20. ~ 1. 25.(5일간)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에”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로, “자 (이하 “청원자”라 한다)는”을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원자”를 “청원인”으로,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이 유등을 구체화 하기”를 “이유 등을 구체화하기”로, “참고자료등”을 “참고자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원자는”을 “청원인은”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 다.

제3조 중 “의회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을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을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으

로,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쇄·배부하고”를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로,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원자”를 “청원인”으로, “접수년월일”을 “접수 연월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청원인등 진술)”을 “(청원인 등 진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사”를 “심사·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를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로, “심사하게”를 “심사·의결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를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를”을 “심사·의결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어긋나는등”을 “어긋나는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3분의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채택 되었을”를 “채택되었을”로 하고,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을 “경우 그 사실”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서명 날인한다”를 “서명 또는 날인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구성·운영등”을 “구성·운영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원인 성명 란에 “(서명 또는 인)”을 신설하며, 소개의원 란의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소개위원의견”을 “소개의견”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명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청원인 성명란에 “(서명 또는 인)”을 신설하며, 소개의원란의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서식 좌측 하단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관련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u>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u>울산광역시 북구의회</u>-----</p>
<p>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u>의회</u>에 청원하고자 하는 <u>자(이하 “청원자”라 한다)</u>는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u>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에 ----- <u>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u>은 -----</p>
<p>②청원서에는 <u>청원자의</u>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u>서명·날인</u>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u>이유등을 구체화</u> 하기 위하여 필요한 <u>참고자료등</u>을 청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p>	<p>② ----- <u>청원인</u>----- ----- <u>서명 또는 날인</u>----- ----- <u>이유 등을 구체화하기</u> ----- <u>참고자료 등</u>-----</p>
<p>③<u>청원자</u>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u>의거</u> 작성하고, 청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u>청원인</u>은 ----- ----- <u>따라</u> -----</p>
<p>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u>의회의장</u>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p>	<p>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u>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u>-----</p>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 4. (생략)

제5조(이의 신청) 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

-----.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2. (현행과 같음)
- 3. -----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이의신청) ① -----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  
----- 이의신청-----  
-----.

② --- 제1항에 따른 -----  
-----  
-----  
--- 제6조제3항에 따른 -----  
-----  
-.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  
-----  
----- 인쇄  
·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 반

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위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생략)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② (생략)

제9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위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아 -----.

② ----- 청원인 -----  
-----  
접수 연월일-----.

③ (현행과 같음)

④ -----  
----- 폐회 중 -----  
----- 20일 이내-----  
----- 기간 내-----  
-----  
-----.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제척과 회피) ① -----  
-----  
-----  
----- 심사·의결 -----  
-----.

② -----  
-----  
-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 -----  
-----  
-- 심사·의결하게 -----.

③ ----- 해당 의원 -----  
----- 본회의의 의결 -----  
에 따른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 1. · 2. (생략)
-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 1.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④ -----  
-----  
- 심사·의결을 -----.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 각호의 어느 하나 -----  
----- 않기로 -----.

- 1. · 2. (현행과 같음)
- 3 .  
-----  
----- 어긋나는 등 -----  
-----

제11조(심사보고) ① -----  
-----  
-----  
-----  
----- . ----- 휴회 중 ----- 7일 이내 -----  
----- 3분의 1 -----  
----- .

② -----  
-----  
-----  
----- .

-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생략)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채택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 5. (생략)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

-----.

2. (현행과 같음)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  
----- 채택되었을 -----  
----- 지체 없이 -----.

② -----  
----- 지체 없이 -----  
-----.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  
----- 경우 그 사실 -----  
-----.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청원의 철회) -----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  
-----  
----- 해당 -----  
-----.

제16조(징계) -----

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  
치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  
 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산광  
 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  
 용한다.

----- 제9조에 따른 -----  
 -----  
 ----- 때에는 「지방자치  
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  
 -----.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산  
 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신·구 별지 서식 대비표

현				개정안			
<b>【별지 제1호 서식】</b> 청원 소개의 견서				<b>【별지 제1호서식】</b> 청원 소개의 견서			
청원건명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청원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소개의원	(서명 또는 인)		
소개년월일				소개년월일			
소개의원의견				소개의견			
<b>【별지 제2호 서식】</b> 청원 철회요구서				<b>【별지 제2호서식】</b> 청원 철회요구서			
청원건명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소개의원	(서명 또는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철회요구사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회 위원장 (인)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